



Safer and Cleaner Shipping

제조후 등록검사
안내서
2021





Why Choose KR as Your Partner?

✚ KR 은

- ✓ 국제선급연합회(IACS)의 정회원이며 국내 유일의 선급 단체입니다.
- ✓ 모든 검사원이 높은 QUALITY와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 ✓ 조선 설계, 해양 기술 등에 특화된 엔지니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 고객이 만족하는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전 세계 82 개국의 협약 및 정부대행검사를 수행

✚ 본부 및 국내 15 개 지역, 해외 51 개 지역에서 365 일 24 시간 서비스를 제공

SURVEY NETWORKS





진보된 기술 서비스

- ✓ CSR software program
- ✓ Sea Trade Awards winning database program : KR-CON
- ✓ Rule Check System for the European Maritime Safety Agency(EMSA)
- ✓ MED MOU Project
- ✓ Energy Saving and Energy Efficiency Improvement Technology
- ✓ Vessel's Information Service Program : Smart Fleet

KR 은 PSC(항만국 통제) Detention 예방에 적극적인 활동

타 IACS 선급과의 경쟁력을 갖춘 최적화된 검사 수수료를 제공



제조후등록검사 (TOC 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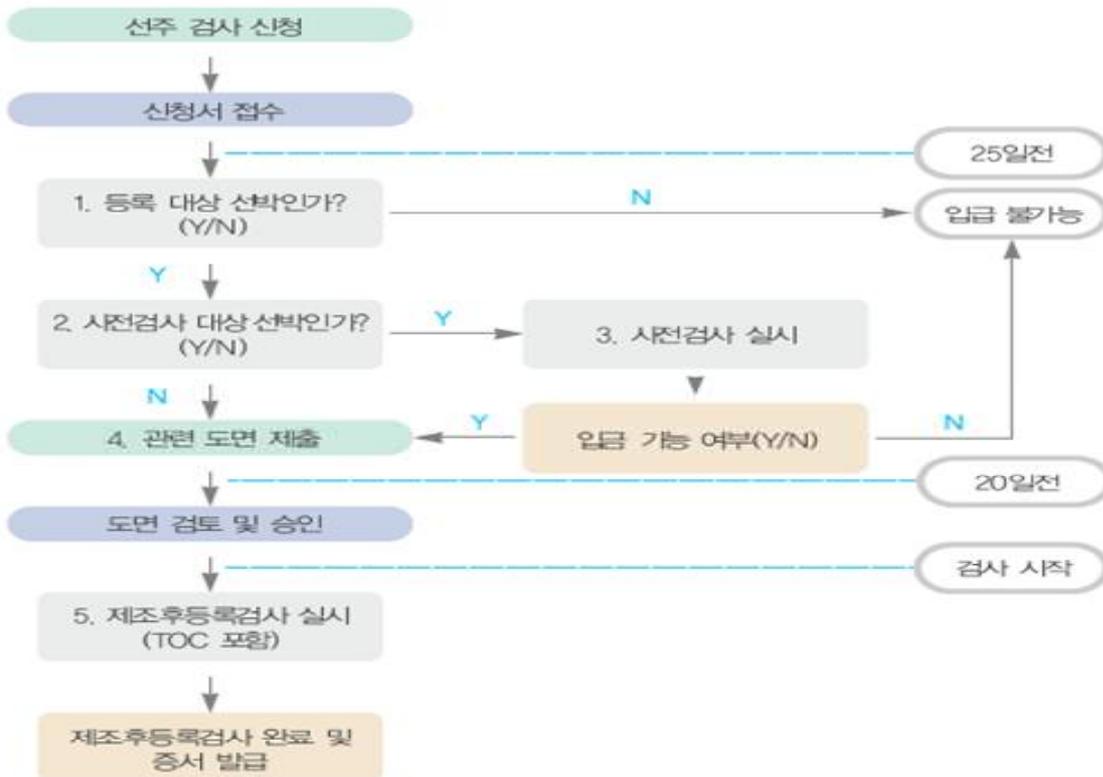
✚ 제조후 등록검사란?

신조선 검사를 완료하고 기국에 등록된 선박에 대한 등록 검사

✚ TOC 란?

타 IACS 선급에 등록된 선박이 KR 로 선급을 이전하는 것

<제조후 등록검사(TOC 포함) 공통 절차>





1. 등록대상 선박은?

✚ 선령 20년 미만의 선박

✚ 총톤수 100톤 이상의 선박(다만, 100톤 미만일지라도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조후등록을 고려할 수 있음)

✚ 톤수에 관계없이 특수한 선박

- 특수한 선박이란 잠수선, 수중익선, 에어쿠션선, 해저자원 굴착선, 반잠수형 또는 갑판승강형의 선박 및 잠수설비를 가진 선박, 주기합계마력이 1,000마력 이상으로 Rudder-Peller 또는 이와 유사한 축계장치를 갖는 예인선 및 기타 우리 선급이 인정하는 선박

* 단, 선령 20년 미만의 선박일지라도 선박의 관리상태, 이전 PSC 기록 등에 따라 제조후등록이 불가할 수 있음. (필요한 경우, PSC OVERALL INSPECTION 시행)

선령이 20년 이상의 모든선박은 원칙적으로 제조후등록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나, 아래의 조건을 고려하여 제조후등록 적합성을 검토한다.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전검사를 시행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제조후등록 진행여부를 결정한다.

- 선령, 선종
- QSCS 인증선급 등록 유지, QSCS 인증선급 제조중등록 및 최근 6개월 이내에 우리선급 등록 유지
- 선종변경, 항해구역 변경 등 개조여부
- 최근 3년간 PSC 출항정지 기록
- 따라서, 선령 20년 이상의 선박의 제조후등록 가능 여부는 필히 KR 검사업무팀에 문의 바람.



2. 사전검사 대상선박은?

✚ 선령 20년 이상의 모든 선박

✚ 선령 15년 이상의 선박으로 Timber Load Line 을 갖는 Cargo Ship
및 여객선

*다만, 선박의 상태 및 선사의 선박관리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선령 20년 미만일지라도 사전검사를 시행할 수 있음.

✚ 사전검사의 실시

■ 선령 20년 미만인 선박인 경우

선박 전반에 대한 현상검사를 시행

■ 선령 20년 이상의 선박인 경우

상기 1)항에 추가하여 다음 사항에 대한 현상검사를 시행

(가) 화물이 적재되지 않은 상태에서 본선의 전반적인 상태 검사

(나) 모든 화물창에 대한 정밀검사

(다) 각 대표적인 밸러스트 탱크 총수의 50% 이상 정밀검사

(라) 의심지역 또는 과도한 부식지역에 대하여 선급규칙에 따라 두께 계측

(마) 수중검사 실시(TOC 는 제외)



3. 관련 도면 목록

Main/Basic Plans	
General Arrangement	Capacity Plan
Intact Stability Booklet	Loading Manual
Damage Stability Booklet	Freeboard Plan
Cargo Securing Manual	Fire Protection Plan
Visibility Plan	Damage Control Plan
Ship Structure Access Manual	Coating Technical File
Ship to Ship Operation Manual	



Hull Structure Plans	
Midship Section	Shell Expansion
Construction Profile & Deck plan	Hatch Covers
Transverse Bulkheads	Rudder & Rudder Stock



Machinery Plans	
Machinery Arrangement	Shafting Arrangement
Wiring Diagram of power system	Hull Piping Diagram
Arrangement of Electric Equipment	E/R Piping Diagram
Fixed Fire Fighting System	SOPEP/SMPEP
Stern Tube Bearing & Sealing Device	
Fire Control Plan/Life Saving Plan	P & A Manual
M/E Crankshaft	Reduction Gear
Steering Gear System	Propeller
Investigation table of Electric Load Analysis	
Operation Manual for ODMC	EEDI Technical file
VOC Management Plan	BWMP





4. 제조후등록 검사

제조후 등록검사

- 선령에 해당하는 정기검사와 동등한 정도로 선체, 기관, 의장 및 비품의 구조, 재료, 공사 및 현상을 검사하고 필요에 따라 주요부분의 현재치수를 실측이 요구됨
- 제조중 등록검사에 준한 주요도면 및 서류를 제출하여 사전검토가 요구됨

TOC(선급이전) 검사 항목

선령	선체검사		기관검사
20년 이상	정기검사 항목		모든 주요장치에 대하여 전반적인 검사 시행
15년 이상 ~ 20년 미만 (ESP 대상 선박)	차기 도래하는 중간검사 또는 정기검사 항목		
10년 이상 ~ 15년 미만	연차검사와 동등한 정도	대표적인 발라스트구역+화물구역	
5년 이상 ~ 10년 미만	연차검사와 동등한 정도	대표적인 발라스트 구역	
0년 이상 ~ 5년 미만	연차검사와 동등한 정도'	-	

TOC검사를 위한 참고 사항

- 이전 선급의 OVERDUE된 지적 사항 또는 선급유지조건이 있는 경우
 - 선령 15년 미만인 선박인 경우 KR이 완료 가능함
 - 선령 15년 이상의 선박의 경우 이전선급이 완료하여야 함

 - 이전 선급의 두께 계측기록을 인정하는 경우
 - 중간검사항목대상 : 등록검사 완료 전 18개월 이내의 기록
 - 정기검사항목대상 : 등록검사 완료 전 15개월 이내의 기록

 - TOC검사시기가 입거검사 시기가 아닌 경우는 수증검사로 대체가능
 - 여객선 및 어선의 경우 TOC라 할지라도 검사사항은 TOC검사가 아닌 제조후등록검사를 시행하여야 함
- 모든 검사가 최신화되었다는 기록에도 불구하고, 선령 및 탈급선급의 선급현황에 기초하여 범위가 정해져야 하는 등록검사는 최소 기술요건으로서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우리 선급은 선박의 상태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상기에서 요구하는 것보다 더 엄격한 범위의 검사를 요구할 수 있다.

중복 선급선으로 우리 선급에 등록하는 경우

■ **중복선급선(double classed vessel):**

두 개의 선급에 등록된 선박으로서 각 선급이 마치 그 선박의 유일한 선급인 것처럼 모든 검사를 각 선급의 요건과 일정에 따라서 시행하는 선박

■ **TOC 검사 항목과 동일함**



공동 선급선으로 우리 선급에 등록하는 경우



■ **공동선급선(dual classed vessel) :**

두 개의 선급에 등록된 선박으로서 업무의 분담, 각 선급이 상대선급을 대신하여 시행한 검사에 대한 상호 인정 및 모든 선급현황과 검사보고서에 대한 정보의 교환에 대하여 문서화된 협정을 맺은 선박

■ **최소한 연차검사 수준의 등록검사**



5. 제조후 등록관련 FAQ

1) 제조후 등록검사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 ✓ 검사신청서(추가자료 1/2, 2/2 포함)
- ✓ 선주동의서(TOC의 경우만 해당)
- ✓ 송부처 : 검사업무팀
(E-mail: toc@krs.co.kr)
- ✓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
우리선급 홈페이지(www.krs.co.kr)
온라인신청서비스 -> 신청서 다운받기



2) 제조후 등록검사 완료 전 제출 및 검토 받아야 되는 도면은?

TOC	한국적 (BBCHP포함)	검사완료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배치도/화재제어도(국/영문 병기) 본부 승인 ✚ 현장검사원 확인 도면 (12종)
		검사완료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급관련 도면 제출은 3개월 이내 ✚ 국적변경 관련 도면 승인은 5개월 이내
	순수 외국적	검사완료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급관련 도면 제출은 3개월 이내 ✚ 국적변경 관련 도면 승인은 5개월 이내
✚ 모든 개조 및 변경 관련 도면은 검사완료 전 승인			
TOC이외	모든 도면은 제조후등록 검사 전 검토 완료되어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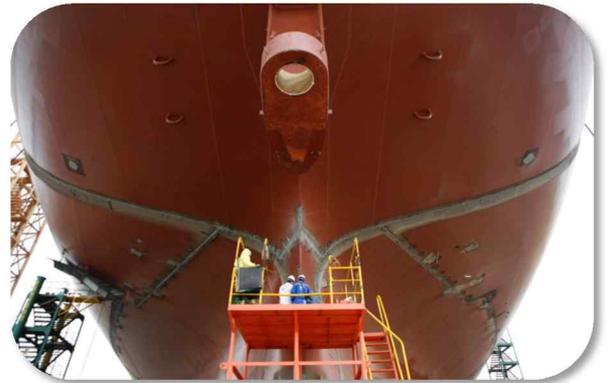
3) 타 IACS 선급에서 KR로 이전 시, 검사의 DUE DATE는 바뀌는가?

- ✓ 타 IACS 선급에서 지정한 검사지정일을 그대로 인정하며, TOC와 동시에 해당 정기적 검사를 시행할 수도 있습니다.



4) 국제항해를 하지 않던 선박을 한국 이외의 지역에서 인수 후, 한국에서 제조후 등록검사를 시행할 수 있는가?

- ✓ 임시항해검사 및 항행적합성 검사를 수검하고 단일 항차에 한하여 협약면제증서를 발급받아 한국으로 이동 후 제조후 등록검사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5) 선급단기증서를 발급받은 후 일상적인 항해 및 영업활동을 할 수 있는가? 선급만기증서는 언제 발급이 되는가?

- ✓ 선급단기증서의 효력은 만기증서와 동일하므로 영업 활동이 가능합니다.
- ✓ 단기 선급증서 발급 후 5개월 안에 관련 도면 제출 및 승인사항이 완료된 경우 만기증서가 발행됩니다.



6) TOC 검사 시, 선주동의서(Owner Agreement)는 왜 필요한가?

- ✓ TOC검사를 위하여 이전 선급의 SURVEY STATUS 및 관련 보고서가 필요하며, 선주동의서가 있어야만 이전 선급이 동 자료를 제공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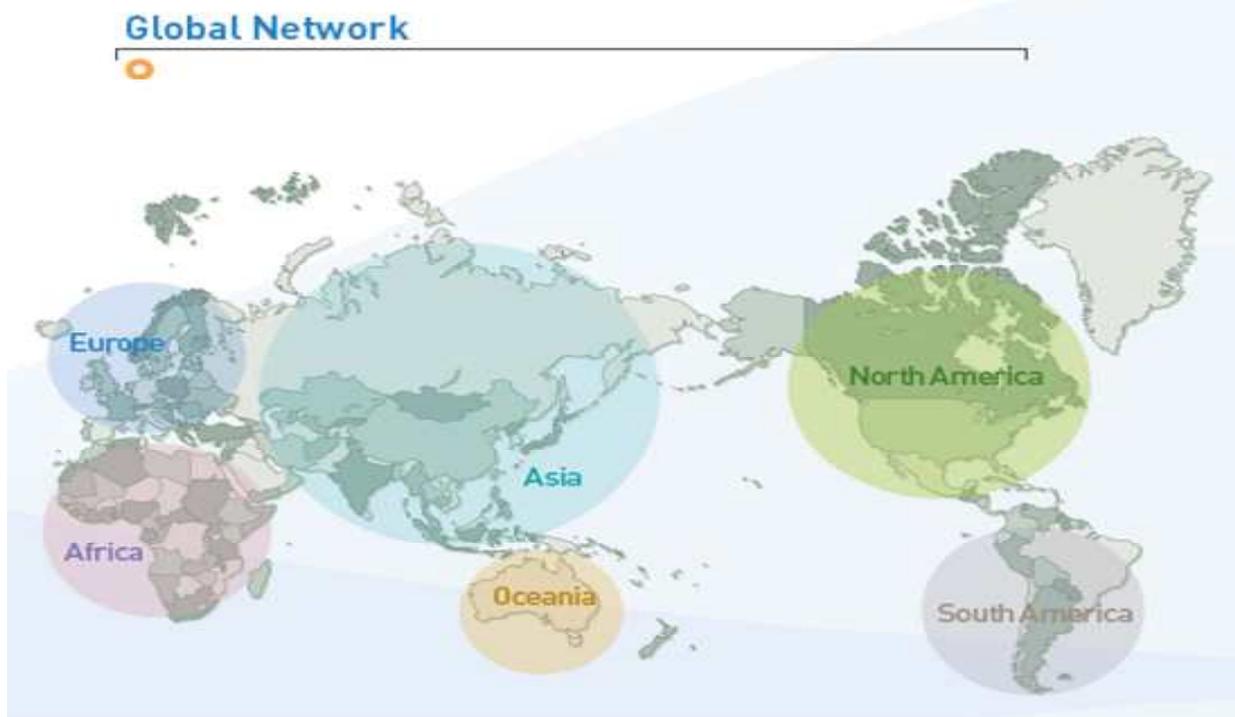


7) 선박 인수 시, 특별히 챙겨야 할 자료는 ?

- ✓ Freeboard Assignment
- ✓ Tonnage Calculation Sheets
- ✓ 1998.7.1 전 건조 계약된 Bulk Carrier 의 경우, URS19 및 URS31 Calculation Sheets
- ✓ 이전선급으로부터 승인 받은 기술 자료 (각종도면, 복원성자료, Loading Manual, SOPEP등)
- ✓ URS19 : Evaluation of Scantlings of the Transverse Watertight Corrugated Bulkhead between Cargo Holds No. 1 and 2, with Cargo Hold No.1 Flooded, for Existing Bulk Carrier
- ✓ URS31 : Renewal Criteria for Side Shell Frames and Brackets in Single Side Skin bulk Carrier and Single Side Skin OBO Carrier not Built in accordance with UR S12 Rev.1 or subsequent revisions
- ✓ URS12 : Side Structure in Single Side Skin Bulk Carriers



GLOBAL NETWORK



Europe

Europe HQ (Greece)
 Madrid (Spain)
 London (UK)
 Rotterdam (Netherland)
 Athens (Greece)
 Copenhagen (Denmark)
 Hamburg (Germany)
 Milano (Italy)
 St. Petersburg (Russia)
 Istanbul (Turkey)
 Dubai(UAE)
 Tehran(Iran)
 Bandar Abbas(Iran)
 Paris(France)
 Lisbon(Portugal)

Africa

Durban (ZAF)
 Accra(Ghana)
 Alexandria (Egypt)

China

China HQ(Shanghai)
 Nanjing
 Ningbo
 Dalian
 Shanghai
 Qingdao
 Guangzhou
 Hong Kong

Japan

Tokyo
 Kobe
 Fukuoka
 Nagoya
 Hiroshima

Asia

Asia-Pacific HQ (Singapore)
 Singapore
 Jakarta (Indonesia)
 Mumbai (India)
 Taipei (Taiwan)
 Ho Chi Minh (Vietnam)
 Bangkok (Thailand)
 Kuala Lumpur (Malaysia)
 Chennai (India)
 Manila (Philippines)

Oceania

Sydney (Australia)
 Perth (Australia)
 Brisbane (Australia)

North America

Houston(USA)
 New York(USA)
 Los Angeles(USA)
 Vancouver(Canada)
 New Orleans(USA)
 Seattle(USA)

South America

Panama
 Buenos Aires (Argentina)
 Sao Paulo (Brazil)

Published By

KOREAN REGISTER

부산광역시 강서구 명지오션시티 9로 36

기타 질의사항은 검사업무팀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Tel No.:070-8799-8200

E-mail : toc@krs.co.kr

Home Page : <http://www.krs.co.kr>

